

2025년 양구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

양구군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12월 3일

양 구 군 수



1. 채용개요

- 가. 채용분야 :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(한국어교육, 부모교육, 자녀생활서비스)
- 나. 채용방법 : 공개채용
- 다. 채용부서 : 양구군청 평생교육과(드림스타트)
- 라. 채용인원 : 3명

2. 근무조건

- 가. 근무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0. 31.(10개월)
- 나. 근무기준 : 주2회, 2시간, 4가구 이상 반의 수업 담당 (연중 80회기)
- 다. 보 수 : 시급 12,810원, 주2회, 2시간, 4명 방문 이상
주휴수당(총족 시, 시간당 2,570원), 교통비(1회당, 4,000원)
명절수당(6개월근무 시), 회의 수당 지급 등
- 라. 후생복지 : 4대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
- 마. 근무내용 : 방문교육(한국어, 부모자녀생활교육)
※ 주40시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
- 바. 근로장소 : 관내 다문화가정
- 사. 기타사항
 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채용
 -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(업무능력부족, 무단결근, 불법행위 등)

3. 응시자격

가. 공통요건

- 지역 :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성별 : 제한없음 (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)
- 연령 : 20세 이상부터 60세
- 아래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 - 「양구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2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
양구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2조(채용 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 - 이하 생략 -

나. 필수요건

- 한국어교육지도사

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
-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*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

* “시민·사회단체 등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

- 생활지도사

- 건강가정사·보육교사·교원(유치원교사자격 포함)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

4. 채용서류 공고·접수

- 가. 공고기간 : '24. 12. 3.(화) ~ 12. 13.(금) / 9일 (공휴일 제외)
- 나. 접수기간 : '24. 12. 4.(수) ~ 12. 13.(금) / 8일 (공휴일 제외)
- 다. 접수처 : 양구군 평생학습관 (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팀)
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-5 1층 사무실
- 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(09:00~18:00, 점심시간 및 주말 제외) 내 방문 접수
- 마. 접수관련 문의 : 033-480-2441 ※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

5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 1부(서식 1)
- 나. 자기소개서 1부(서식 2)
- 다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서식 3)
- 라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서식 4)
- 마. 자격증사본, 학위증명 관련 등 서류 일체
- 바. 범죄조회경력서(아동학대, 노인학대 전력) *합격자에 한해 추후제출
※ 경력 및 자격증, 최종학력증명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함.

6. 심사 방법 및 일정

- 가. 1차 심사 : 서류심사 '24. 12. 16.(월)
 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'24. 12. 16.(월) * 서류 합격자 한해 개별 유선 공지
 -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,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
 - ※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채용예정분야의 전공 및 자격증 (우대사항), 양구군 거주기간 등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.
- 나. 2차 심사 : 면접심사, '24. 12. 19. (목) (예정)
 -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
 - *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지
 - ※ 센터별로 인사위원회(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, 민간전문가,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)를 구성 진행 예정 (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1인 이상 반드시 확보)
 - 합격자 선정 : '24. 12. 20.(금) (예정) / 개별통보

* 합격자에 한해 개별 우선 통지

*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업취약 계층을 우대함

취업취약 계층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저소득층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(단, 1인 가구는 120% 이하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건강보험료 납입액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·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· 여성가장 : 여성 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· 만55세 이상 고령자· 장애인·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

7. 행정사항

가. 최종 면접 합격자에 양성교육 실시 후 최종합격 처리 및 근로계약 체결

8. 기타 유의사항

가.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나.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.

다.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,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라.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양구군청 홈페이지(www.yanggu.go.kr) 공고합니다.

마.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 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평생교육과(드림스타트담당자 ☎ 033-480-244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심 사항목	총배점	배점
총점		53점	
양구군 거주기간 (주민등록초본 기준) ※ 공고일 기준	20년 이상	50점	50점
	15년 이상 ~ 20년 미만		40점
	10년 이상 ~ 15년 미만		30점
	5년 이상 ~ 10년 미만		20점
	5년 미만		10점
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(자격증 사본) ※ 응시분야 해당자격증 소지자	자격증 3개 이상	최대 3점	3점
	자격증 2개		2점
	자격증 1개		1점

※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.

※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양구군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.